

2018년 한국가스공사 청원경찰 신입직원 채용공고문

2018년 청원경찰 신입직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관련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될 예정 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참조)

I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1. 모집인원

채용직급	근무지역 ¹⁾	모집인원 ²⁾	근무조건	직무내용
청경조원3급 (신입)	본사 또는 생산기지	34.5명	전일제 교대근무	시설 경비, 방호 및 보안 등 (세부사항 직무설명자료 참조)

- 1) 근무지역 : 본사 또는 생산기지 중 공사 여건에 따라 배치 예정
(시간선택제 청원경찰이 전일제 전환 채용시 동일하게 적용)
- 2) 공사에 현재 재직중인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51명(전일제 인원기준 25.5명)과
합동으로 공개경쟁 채용예정이며, 시간선택제 청원경찰이 전일제로 전환
채용될 경우 1명당 0.5명으로 계산됨(0.5명은 현재 재직인원으로 기 산정)

산식) 합격자(34.5명) = (시간선택제 전환채용 합격자×0.5) + 신규지원 합격자

* 참고자료#1 참조

2. 지원자격 [임용예정일 ('18.12.31) 기준]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만18세 이상인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내부규정

- 공사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고등학교 졸업수준 이상인 자
- 사격 등 경비 관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24시간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공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만 지원가능
- 지정일('18.12.31)로부터 현업 근무 가능자

II 전형절차(NCS기반)

전형단계	주요내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18.11.6(화) 오전10:00부터 ~ 11.13(화) 오전10:00 까지 [접수방법] 인터넷으로 접수(www.kogas.or.kr) ▶입사지원서 작성 및 우대사항 입력 등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선발]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적격여부 심사 [합격자발표] '18.11.15(목)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필기전형 공지 등)
필기전형	[10배수 선발*] 인성검사 적합자중 NCS직업기초능력(100%) 및 가점합산 고득점순 선발 ▶일자 및 장소 : '18.11.17(토) 수도권에서 시행 ▶전형내용 : NCS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 인성검사(적부판정)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 ○ NCS직업기초능력(100점) :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직업기초능력 평가시행 - NCS직업기초(100점) 및 가점합산 60점미만 또는 인성검사 부적격시 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합격자발표] '18.11.22(목)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체력검정 공지 등)
체력검정	[43명 선발*] NCS직업기초(50%반영)+체력검정(50점) 및 가점합산 고득점순 선발 ▶일자 및 장소 : '18.11.24(토)예정, 전형시간 및 장소는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 ▶전형내용 : 체력검정 2종목 실시(종목별 배점기준 첨부#1 참조) - NCS직업기초(50%반영)+체력검정(50점) 및 가점합산 60점미만시 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합격자발표] '18.11.29(목)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면접전형 공지 등)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직무상황면접(100%) 및 가점합산 고득점순 선발 ▶일자 및 장소 : '18.12.3(월) ~ 12.9(일), 공사 본사(대구시 동구 침단로 120) 예정 ▶직무상황면접(100점) 실시 : 직무상황 제시 및 발표, 입사지원서 질의응답 등 - 직무상황면접(100점) 및 가점합산 60점미만시 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면접전형시 개인 신상자료는 블라인드 처리되며,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면접관으로 구성 예정 [합격자발표] '18.12.13(목) 17:00이후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신체검사 공지 등)
임용예정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임용승인] 적격자에 대하여 수습채용(3개월) ▶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전환대상은 제외) ▶내용 :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지방경찰청 임용승인 등 ▶입사예정일 : '18.12.31(월) (시간선택제 청원경찰의 경우 전일제 전환기준일)

※ 전형단계별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동시 지참하여야 응시가능(1가지라도 미소지시 응시불가)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으로 인한 서류전형 불합격 유형 예시

- 입력필수 사항 및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사용, 무의미한 단어 반복, 2개 이상 문항 중복 답변 등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및 체력검정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공사 재직중인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 본사이전 지역인재 - 체력검정 고득점자 -필기 고득점자 이 경우에도 동점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전형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III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전형단계별 가점비율(5% 또는 10%)에 따라 가점 부여 및 동점자 처리 우대
 - 단,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가점부여 제외
- 공사 재직중인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중 전환 채용에 지원한자
 - 서류전형, 필기전형, 인성검사 및 체력검정 면제
 - 면접전형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 및 동점자 처리 우대
 - 시간선택제 전환 채용 인원이 짝수인원으로 채용이 될 경우 합격배수 이외의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중 합격점수 커트라인의 90% 이상이 되는 최우선 순위자 1명 추가합격 처리

[예시] 전환채용 합격자수에 따른 추가합격(참고자료#1 참조)

짝수	○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전환채용 합격자 20명(40명×0.5) ○ 신규지원 합격자 14명 ☞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1명 추가합격 처리
홀수	○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전환채용 합격자 20.5명(41명×0.5) ○ 신규지원 합격자 14명

- 본사이전 지역인재
 - 전형단계별 본사이전 지역인재의 합격자인원이 목표비율 18%에 미달시 적격자에 한해 추가합격 처리(첨부#5 참조)
 -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우대

※ 우대사항별 중복적용 가능

IV 유의사항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소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이후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제출 후 **지원서확인을 통해서 제출여부 및 지원서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전에 지원서 수정이 가능하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제출** 하여야 최종 지원된 것으로 간주)
-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관련 지원자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 되거나 또는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 발견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각 전형시 공사가 인정하는 **공인신분증* 및 수험표를 반드시 동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사원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 응시하거나 또는 수험표 등 1가지라도 미소지시 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기간 만료전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한함
- **필기전형 안내**
 - NCS직업기초능력(10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
- **체력검정 안내**
 - 체력검정 당일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체육복 지급 예정입니다.
 - 체력검정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면접전형 안내**
 - 직무상황면접(100점) : 직무관련 제시된 상황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시간 (약30~40분) 동안 준비후 발표,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등 (일대다 면접)
- 단계별 합격자가 배수인원 미달 시는 적격자에 한하여 차기 전형 실시합니다.

V 전형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 결과공개

서류전형	필기전형	체력검정	면접전형
○불합격사유 개별공개	○인성검사 : 적부 공개 ○NCS직업기초능력 -필기점수, 순위, 합격자 커트라인 공개	○결과 현장확인	○합격자 : 면접점수 ○불합격자 - 면접점수 및 예비순번 등

※ 전형별 지원자 경쟁률 현황은 알리오 공시를 참고

□ 이의신청 절차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가능
* 필기문항 관련 이의신청은 필기시험 당일 현장 접수만 인정
- 신청기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 23:59:59까지

VI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예비합격자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운영기간

- (입사포기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채용 전일까지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 (부정합격자 발생시)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필기전형, 체력검정) 차기 동일전형의 채용 건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단계 이후의 전형에 대하여 기회 부여(1회限)
ex) 필기전형 피해자 → 차기 채용시 체력검정 기회 부여
- (면접전형) 채용비리 사실 확인시 부정으로 채용된자 퇴출 후 즉시 채용

VII 기 타

- 각종 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정보는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동안 관리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차기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 제출서류는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첨부#6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에 방문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스캔하여 recruit@kogas.or.kr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 시 본사이전 지역인재의 지역 정보 입력은 본사이전 지역인재 확인을 위한 자료이며,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채용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가스공사 채용콜센터(1833-4830), 오전9시 ~ 오후6시(평일만 운영)
 - * 한국가스공사 채용홈페이지(kogas.incruit.com) Q&A

첨부#1

체력검정 기준표

□ 체력검정 과목 및 배점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12.5점	10점	7.5점	5점	2.5점
남 자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이하
여 자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이하

비고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2.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첨부#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3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첨부#4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자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 · 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 ·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偽裝)한 총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5

본사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대상 : 최종학력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19년 2월 졸업예정자

* 사관학교,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평생교육시설 등은 해당 없음

※ 관련근거 : 혁신도시법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참고#2 참조)

□ 우대내용 : 각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비율 18%에 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단, 단계별 합격자 커트라인 총점 -5점 미만자는 제외)

ex)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NCS직업기초능력+가점) 80점일 경우

☞ 목표인원 미달 시 75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

○ 신규 지원자의 경우는 법령에 의거 전형단계별 선발인원의 18% 적용

○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지원자의 경우는 기 채용시 지역인재 우대를
받지 않은 지원자에 한하여 채용인원의 18%한도에서 적용

□ 추가합격자 선정기준

○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100%)+가점 합산 고득점순

○ (체력검정) NCS직업기초능력(50%)+체력검정(50점)+가점 합산 고득점순

○ (면접전형) 직무상황면접(100%)+가점 합산 고득점순

*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시는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본사이전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구 또는 경북지역 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입사지원시 반드시 입력(체크) 하여야 하며, 미입력시 우대불가

첨부#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1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전환 채용 vs 신규지원 채용 인원 비교

(단위 : 명)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전환채용 합격인원 (A)	신규지원 합격인원 (B)	시간선택제 청원경찰 전환채용 추가합격인원 (C)	채용인원 계 (D=A+B+C)
0	34	1	34.5
1	34	0	34.5
2	33	1	34.5
3	33	0	34.5
4	32	1	34.5
5	32	0	34.5
6	31	1	34.5
7	31	0	34.5
8	30	1	34.5
9	30	0	34.5
10	29	1	34.5
11	29	0	34.5
12	28	1	34.5
13	28	0	34.5
14	27	1	34.5
15	27	0	34.5
16	26	1	34.5
17	26	0	34.5
18	25	1	34.5
19	25	0	34.5
20	24	1	34.5
21	24	0	34.5
22	23	1	34.5
23	23	0	34.5
24	22	1	34.5
25	22	0	34.5
26	21	1	34.5
27	21	0	34.5
28	20	1	34.5
29	20	0	34.5
30	19	1	34.5
31	19	0	34.5
32	18	1	34.5
33	18	0	34.5
34	17	1	34.5
35	17	0	34.5
36	16	1	34.5
37	16	0	34.5
38	15	1	34.5
39	15	0	34.5
40	14	1	34.5
41	14	0	34.5
42	13	1	34.5
43	13	0	34.5
44	12	1	34.5
45	12	0	34.5
46	11	1	34.5
47	11	0	34.5
48	10	1	34.5
49	10	0	34.5
50	9	1	34.5
51	9	0	34.5

참고#2

본사이전 지역인재 우대 관련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2017.10.24.>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이하 생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이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 대비 별표 1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별표 1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이상이 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신설 2018.1.23.>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에 포함하여 채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

⑤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8.1.23., 2018.2.27.>

1.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인 경우: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
2.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속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이 아닌 경우: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 [전문개정 2017.7.17.] [제목개정 2018.1.23.]